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송도호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640호

다. 제출일자 : 2019. 5. 16.

라. 회부일자 : 2019. 5. 24.

2. 제안사유

- 교통문화교육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역량향상과 생활편의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운영에 있어 공익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관련 조항이 미비한바 해당 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개정 시행사항 반영 (안 제1조)
- 나. 공휴일인 선거일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제5조제2항)
- 다. 수탁자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16조)
- 라. 시장은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17조)
- 마.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밖에 교통문화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5. 29 ~ 2019. 6. 5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수정동의

-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7항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개월로 수정 요청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교육원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관련 법령 및 규정 내용을 반영(안 제1조 및 제5조제2항)

- 안 제1조 및 제5조제2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1)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용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물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 편의시설 제공을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원 설치·운영 근거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포함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하는 것은 교육원의 교육현실과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도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현행 조례 제5조제2항3) 등에서 교육원은 일요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격주로 시설을 휴관하고 있는 바, 실제 운영현실과 조례 규정을 보다 정확히 일치시킬 필요도 있을 것임

■ 교통문화교육원 예산 및 결산안 제출 관련(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교육원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전년도 지출한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원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생략)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외공관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다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7항4)에 수탁기관의 결산서 작성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합치되지 않아 조례 해석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5)에 따르면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편성 기간보다 지연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육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및 결산안 제출 시기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장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제18조)

- 안 제17조는 시장이 교육원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검사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교육원 수탁자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⑨ (생략)

5)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예산안 제출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의 지도·감독 강화 및 계약해지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교육원 운영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